

소방서 구급대·안전센터		구급 거절·거부 확인서		결재	119구급대장(센터장)	
구급일지 일련번호					-	
구분		☐ 이송 거절(구급대원) ☐ 이송 거부(환자/보호자)				
환자평가 ※ 부분에 체크한 경우 의뢰지도에 따를 것.	환자의 병력·증상 및 주변상황, 발병 또는 손상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가?			☐ 예 ☐ 아니요		
	세부 항목	▶ 자살시도			☐ 예 ☐ 아니요	
		▶ 머리 손상			☐ 예 ☐ 아니요	
		▶ 약물중독(intoxication)			☐ 예 ☐ 아니요	
		▶ 흉통 또는 복통			☐ 예 ☐ 아니요	
		▶ 호흡곤란			☐ 예 ☐ 아니요	
		▶ 실신(syncope)			☐ 예 ☐ 아니요	
생체징후 ☐ 정상 ☐ 측정 거부	☐ 맥박수 비정상 ☐ 혈압 비정상 ☐ 호흡수 비정상 ☐ 의식상태 이상(異常) 또는 당뇨병인 경우 혈당치 비정상(Chemstrip/Glucometer) ☐ 흉통, 호흡곤란 또는 의식상태 이상인 경우 SpO ₂ 비정상(가능한 경우)					
	<정상 범위> 맥박수 60~100회, 수축기 혈압 100~140 mmHg, 이완기 혈압 60~90 mmHg, 호흡수 12~20회, 혈당치 60 mg/dl 이상, SpO ₂ 95% 이상					
	※ 비응급 환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세부 항목의 평가거부 또는 생체징후의 측정 거부 시에는 이송 거절을 원칙으로 함.					
이송 거절 확인	거절 사유	☐ 단순 치통환자 ☐ 단순 감기환자(38 ℃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) 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☐ 술에 취한 사람(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) 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☐ 단순 열상(熱傷) 또는 찰과상(擦過傷)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☐ 병원 간 이송(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 제외)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☐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			
		구두 확인	☐ 이송을 요청한 사람 ☐ 목격자			
	환자 고지	☐ 상태가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☐ 다른 이동수단의 종류 및 이용방법 ☐ 이송 거절의 이유, 구급대원의 소속·성명·전화번호 및 이의제기방법				
이송 거부 확인	이송 거부	이송 거부로 인하여 환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. 환자/보호자 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:				
	서명 거부	☐ 구두 확인 1차 ☐ 구두 확인 2차				
	목격자	본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119구급대의 이송을 거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. 목격자 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:				
	환자 고지	☐ 상태가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☐ 병원진료가 필요함을 고지				
녹음 등 유무		☐ 녹음/녹화 자료 있음 ☐ 녹음/녹화 자료 없음 ☐ 그 밖의 자료 있음				

본인은 구급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교육·자격 및 경험 등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성실히 평가하였으며,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, 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였습니다.

20 . . . : 구급대원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